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1
----------	-----

2018년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31일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8년 10월 31일
3.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오현정 의원)

1. 제안이유

- 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 보장을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급여를 제공하고자 함.
- 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정규직 및 상용직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높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으로(정규직

에 비해 영세자영업자는 2배, 일용직은 1.7배의 의료비 지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다. 이에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도입을 통해 질병치료 등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나 지원책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서울형 유급병가의 금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시책수립, 중앙정부제도와의 연계)

다. 제4조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구체적인 제도의 안을 규칙에 위임함.

라. 제5조 매년 동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

마. 제6조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달체계 및 신청주의 명시함.

바. 제7조~제12조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설명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질병치료 등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나 지원책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안된 안임.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관련

-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동 조례가 제정되게 된다면 서울형 유급병가의 사업이 실현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한 필요이유 중 하나는 「지방재정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¹⁾ 조례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전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

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금전적인 지원에 의 근거가 명확해야 함. 따라서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하여서는 동 조례 제정안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나. 구체적인 수행방향과 관련

- 동 조례 제정안은 제3조제1항에서 시장의 책무를 통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를 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유사 제도에의 중복수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주요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동 조례 제정안은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위임하였음. 이는 사회보장성 급여로서 서울형 유급병가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득기준의 설정, 재원의 안정적인 마련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안으로 평가됨.
- 동 조례 제정안 제5조는 유급병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동 조례 제정안 제4조와 함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하며 동 조례 제정안 제7조에서 제시하는 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급병가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심의받도록 되어 있어 시의 자의적인 집행이나 선심성의 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외부 환경에 대한 의견

-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사업의 실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안 제출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은 동 조례 제정안의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나친 정도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에 단체가 자율적으로 복지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없게 만들어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임.
-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수행될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은 상병수당과 아주 유사한 제도인 바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하고자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실험적인 제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동 조례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사회적인 파급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존재함.
-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수행될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은 상병수당과 아주 유사한 제도인 바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하고자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실험적인 제도로 존재할 가능

성이 높음. 따라서 동 조례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사회적인 파급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존재함.

4 종합의견

-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안의 발의와 관련한 부분에 한정할 때)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으며 상위법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조례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하고자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바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집행의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찬성 8명, 반대 1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서울형 유급병가 실행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결과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31일

발 의 자 : 오현정, 이영실, 봉양순,
이정인, 이병도, 임종국,
문장길, 전병주, 조상호,
박순규, 김평남, 김재형,
김호평, 김동식, 서윤기,
김혜련, 한기영, 성흠제,
김화숙, 이동현, 김용연,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 보장을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급여를 제공하고자 함.
-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정규직 및 상용직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높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으로(정규직에 비해 영세자영업자는 2배, 일용직은 1.7배의 의료비 지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도입을 통해 질병치료 등으로 소득상실

이 발생하나 지원책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서울형 유급병가의 금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시책수립, 중앙정부제도와의 연계)
- 제4조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구체적인 제도의 안을 규칙에 위임함.
- 제5조 매년 동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
- 제6조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달체계 및 신청주의 명시함.
- 제7조~제12조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설명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료법」, 「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형 유급병가”란 근로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를 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검진이 필요함에도 소득상실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 또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후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 외의 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서울형 유급병가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액
2. 지원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장, 보건소장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의 적정 여부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의 검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유급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급평가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심의
2. 서울형 유급평가 지침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형 유급평가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포함해서 사회 복지·건강·의료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자 등), 제7조(유급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운영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비용
- 서울형 유급병가 심의위원회 운영비용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비용은 전액 시비 부담을 전제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비용은 전산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출
- 서울형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당연직 2명¹⁾, 위촉직 8명)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3회(정기회 2회, 임시회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 상승률 3.2% 적용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19 예산 등은 소관부서 관련 자료('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예산사업설명서, 첨부자료)를 준용

- 지원대상 : 질병·부상 중인 근로자·자영업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298,880원(유급병가 지원금 1,217,700원 + 건강검진 지원금 81,180)
- '19 예산 : 5,142,352천원(사무관리비 56,000천원 전산개발비 160,000천원
10개월 사업비 4,926,352천원)

-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예산사업설명서 -

- 비용추계 2차년도부터는 서울형 운영비용중 전산개발비는 구축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를 반영하고, 사업비는 1년분 반영하여 산출

1) 같은 조례안 제8조(구성)제3항에 따라 시의원 1인을 포함해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 비용추계 2차년도부터는 서울형 운영비용중 유급평가 지원금은 동사업 연구용역자료 재정 추계를 반영하고, 사무관리비는 변동없으며,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률 3.2%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8,285,801천원(연평균 7,657,16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서울형 유급평가 운영 비용	5,137,552	6,774,675	7,683,369	8,729,914	9,936,291	38,261,801
	서울형 유급평가 심의위원회 운영비용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소계(b)	5,142,352	6,779,475	7,688,169	8,734,714	9,941,091	38,285,801
□ 총 비용(b-a)		5,142,352	6,779,475	7,688,169	8,734,714	9,941,091	38,285,801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시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최경희

☎ 02-2180-7944

e-mail : hiru90@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형 유급평가 운영비용
- 서울형 유급평가 심의위원회 운영비용

2. 세부추계내역

가. 총 비용(≒38,285,801원) = 서울형 유급평가 운영비용(≒38,261,801천원) + 서울형 유급평가 심의위원회 운영비용(≒24,000천원)

나. 서울형 유급평가 운영비용(≒38,261,801천원)

- 총 비용 = $\sum_{i=1}^5$ (서울형 유급평가 연간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서울형 유급평가 연간 운영비용 = 사무관리비 + 전산시스템 운영비 + 사업비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금 + 자치구 운영비(홍보비 등)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 사무관리비 : 256,000천원

- 추계방법 = 1차년도는 2019년 동 사업 예산(56,000천원)에서 위원회 운영비(4,800만원)를 제외한 금액을 추계기간동안 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사무관리비	51,200	51,200	51,200	51,200	51,200	256,000

- 전산개발비 : 280,000천원

- 추계방법 = 1차년도는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160,000천원, 2차년도부터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만 30,000천원 산출(소관부서 의견)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전산시스템 운영비	16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80,000
	전산시스템 구축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 사업비 : 37,725,801천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 자치구 운영비(홍보비 등)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 추계방법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동사업 연구용역자료 재정추계 반영

(입원일수 증가를 5.6%, 생활임금 증가를 11.31%, 기대신청률 30% 적용)

자치구 운영비는 2019년 동 사업 예산 반영하여 추계기간 변동없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019년은 동 사업 예산(10개월분) 반영하고 2020년부터는 12개월분(퇴직직립금 포함) 인건비 상승률 3.2%적용하여 산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4,926,352	6,693,475	7,602,169	8,648,714	9,855,091	37,725,801	
사업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4,397,185	6,000,625	6,888,748	7,914,063	9,098,532	34,299,153
	자치구 운영비 (홍보비 등)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9,167	642,850	663,421	684,651	706,559	3,176,648

주 : 1.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산식은 '16년 유급병가 대상자 입원일수(99,674일) x 입원일수 증가률(5.6%) x '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증가률(11.31%) x 유급병가 기대신청률(30%)

2.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25명/자치구당 1명)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급2호봉 수준에서 수당 제외한 수준으로 2019년은 10개월분, 2020년도부터는 12개월분, 퇴직직립금 반영

다. 서울형 유급병가 심의위원회 운영비용(≒24,000천원)

○ 총 비용 = $\sum_{i=1}^5$ (서울형 유급병가 심의위원회 연간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운영비용 =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 1인(150천원) × 8명 × 3회 = 3,600천원

•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 1인(40천원) × 10명 × 3회 = 1,200천원

- 추계방법 = 위원 수당은 당연직 2명을 제외한 8명, 운영경비는 10명으로 산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서울형 유급병가

1 기 본 현 황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성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 <input type="checkbox"/> 투자	
사업내용	○ 일용직 등 질병 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시민을 위해 조기치료로 큰병 악화사례를 막기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도입		
사업비 (당해년도)	5,142,352천원	(국비)	(시비)5,142,352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정보화예타	2018년 10월 19일	적정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조례		100%		
운영비보조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2133-7505	김규대 2133-7555	이수미 2133-7552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5,142,352	(x-) 5,142,352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56,000	(x-) 56,000	(x-) 0
전산개발비	(x-) 0	(x-) 0	(x-) 160,000	(x-) 160,0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0	(x-) 0	(x-) 4,926,352	(x-) 4,926,352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홍보 및 자문위 운영 56,000,000원 = 56,000천원
		증감사유
		2019년 시행
전산개발비		○ 전산개발 및 운영 160,000,000원 = 160,000천원
		증감사유
		2019년 시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4,926,352,000원 = 4,926,352천원
		증감사유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2019년 시행	

3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 질병 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조기치료로 큰병 악화사례를 막기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도입

사업근거

- 서울형유급병가 추진계획

추진경위

-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는 유급휴가가 없어 설 수 없고 소득상실 걱정으로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문제 발생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치료시에는 의료비 상승보다 소득상실이 오히려 더 높아 의료빈곤층(Medical Poor)으로 추락 우려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월~12월
- 지원대상 :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입원치료→유급병가 신청(동주민센터, 보건소)→지원자격 조사(보건소)→유급병가 지급(보건소)
- 사업의 주요내용 : 입원치료시 연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지원
- 소요예산 : 5,142,352천원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	------	--------	--------

계		5,142,352	
사업시행	2019.01		
사업홍보	2019.01~2019.12	56,000	사업홍보 및 자문위 운영
전산개발 및 운영	2019.01~2019.12	160,000	전산개발 및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2019.01~2019.12	4,926,352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